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(강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00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16.

발 의 자 : 강대식 · 윤재옥 · 김태규
최은석 · 이만희 · 강선영
김장겸 · 김종양 · 박상웅
서천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경우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「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」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, 법률에는 병원선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.

이에 「지역보건법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, 병원선 또한 보건소,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같이 요양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42조제1항제4호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

안」(의안번호 제20002호) 및 「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000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제1항제4호 중 “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”를 “보건의료원·보건지소 및 병원선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2조(요양기관) ① 요양급여(간 호와 이송은 제외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.	제42조(요양기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 소 · <u>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</u>	4. ----- ----- <u>보건의료원 · 보</u> <u>건지소 및 병원선</u>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